

709 호
1979. 4.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철
편집 : 문화정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주제

제1329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회 상조례중개정조례	3
제1330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조례중개정조례	3
제1331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조례	3
제1332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	16

◎ 규칙

제1799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7
--------------------------------	----

◎ 고시

제169호 : 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	17
제17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8
제17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파지적승인	18

<이하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72 호 :	취락구 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주택 지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지적승인.....	20
제 173 호 :	주택 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 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	20
제 174 호 :	하천 풍작물 (송수관매설) 설치협약.....	21
제 175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자 변경자정.....	22
제 176 호 :	도시계획 사업 (주차장) 시행자명의 변경승인.....	22
제 177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일부변경 지적승인.....	23
제 17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3
제 179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24

◎ 공 고

제 130 호 :	주택 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및 관리처 분계획 공람 공고.....	24
제 136 호 :	도시계획 사업 (운동장) 완료공표.....	25
제 137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완료공표.....	25
제 139 호 :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공고.....	26
제 14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26
제 141 호 :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상품수거 또는 수거파기 명령 (처분) 공고.....	28
제 143 호 :	특정연료 사용기기 시공업 지정취소.....	29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 면상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 4.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32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면상
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면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일비 20,000 원을 일비 30,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여비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 4.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33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판내여비) 판내출장에 있어서는 여행거리가 8km 이상 12km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km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금수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331 호

서울특별시금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금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수조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금수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4 조 (금수의 구분) 금수는 다음의 3 종으로 구분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금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 분 기타 공급조건 등 금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용금수: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금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동금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것. 3. 소화용금수: 소화용에 사용 하는 것.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금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 34 조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금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금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금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금수장치를 말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금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금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금수공사라 함은 금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금수 사용자등이라 함은 금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 2 장 금수공사 제 6 조 (금수공사의 승인) ① 금수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자 (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금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금수구역) 금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p>제7조(시공업 허가)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상수도 시공영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격 점정시험(이하 "점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그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p> <p>③ 시공업 허가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정시험 수수료 : 1건당 5,000원 2.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3. 시공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3,000원 4.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 수수료 : 1건당 5,000원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p> <p>②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p>	<p>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체검사 수수료 :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 원 2. 준공검사 수수료 : 1건에 대하여 10 만원 이하의 품사는 2,000 원, 50 만원 이하의 품사는 3,000 원, 50 만원 초과 품사는 5,000 원. <p>제9조(비용부담 및 금수장치의 설치) ① 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금수장치 중 유희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p> <p>② 공사신청인은 제1항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전부 행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수관의 구경 13% ~ 50% 1건당 1,000 원 2. 금수관의 구경 75% 이상 1건당 4,000 원 <p>③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청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p> <p>④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 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노력비, 사무비, 도로복구비의</p>
---	--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 한다.

제 11 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금수장치의 설치 또는 제 9조(금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제 1의 시설분담금을 제 10 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호별 산정 기준에는 금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 12 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실제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 6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 9조 내지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흡수정 이하의 설치)

① 시장은 다량의 금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금수장치의 위치변경)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위하여 금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시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금 수

제 16 조(양수기의 설치) ① 양수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양수기(노후 양수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금수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금수 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되는 불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p>제 17 조 (양수기의 시험) ① 금수사 용자 등은 양수기에 이상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 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금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 로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월 분 요금에서 청산 하거나 환부도 는 주장한다.</p> <p>제 18 조 (공용금수장치의 관리) ① 공 설의 공용금수 장치를 제외한 금 수장치에서는 금수판매를 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공용금수장치의 금수판 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 금수장치의 금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19 조 (시설 소화용 금수) ① 시설 소화용 금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상시에는 통합한다. ② 시설 소화용 금수를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 항의 연습용 금수에 대하여 는 별도 제 2에 의한 사용료를</p>	<p>선납 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공익상 금수 제한 청지) ① 시장은 계획 또는 금수공사 기 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수를 제한하거나 청지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금수제한 또는 청지의 결과 금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p> <p>제 21 조 (금수장치의 제전, 중지) ① 금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금수의 중지 또는 금수 장치의 제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금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수장치를 제전 할 수 있다. 1. 금수 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용없이 2월 이상 금 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 1 항에 의한 중지기간이 경 과 하려고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 우로 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 계획 사업등의 시행으로 금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 때</p> <p style="text-align: right;">제 4장 요 금</p>
---	--

제 22 조 (급수사용료)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3 조 (급수관 손료)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제 3에 의하여 급수관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동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가압료)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실비를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료는 1㎥당 10 원으로 한다.

제 25 조 (급수량의 계량조정) ①시장은 매월 양수기에 의하여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 개의 양수가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일 때.

3. 기타 인정재량이 불가피할 때.

제 26 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급수사

용료, 급수관 손료 및 가압료(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는 매월 분을 악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 27 조 (일시 급수 사용료의 청납)

①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청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청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청산한다.

제 28 조 (가산금) 급수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9 조 (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관리

제 30 조 (급수사용자등의 의무)

①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와 주의로서 오열 또는 누수가

<p>생하지 아니하도록 금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무를 배반하여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금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② 금수사용자는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③ 금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금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금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금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금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p>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문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금수중단 등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 31 조(금수장치등의검사) 시장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금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수사용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 32 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금수를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상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금수는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폭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	--

29-10 제 709 호 시

보 1979.4.30

운영한자.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수 사용자등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비용을 징수하고 금수를 사용하지 하거나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대금을 징수한다.
6. 사실 소화전을 무단 사용 하였거나 불합을 파손한자.	②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7. 정수처분등의 수전을 무단 계전한자.	제 34 조 (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8. 본래의 지정된 금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금수를 사용한자.	②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8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수있다.
9. 금수를 남용 하거나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수를 판매한자.	③시장의 승인없이 금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10. 제 16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11.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대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②제 1 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천 1회에 3,000 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33 조 (양수기의 고의 파손 망실등)	
①양수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p>④ 수전 상호간에 금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 1 항에 의한 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 2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자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p> <p>제 35 조(금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금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금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p>	<p>제 38 조(특수공업용수) 특수공업용수 금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 39 조(포상금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법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이수액을 정수한 공무원 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저발 또는 계보하여 처분개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계안으로 과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 건당 10만원 이내 <p>② 제 1 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p> <p>제 40 조(양수기점검등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의 위탁을 할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p>제 36 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기타 낭 phí금의 조정 또는 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 37 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정수금의 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 41 조(법률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의 위탁을 할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p>제 38 조(특수공업용수) 특수공업용수 금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 39 조(포상금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법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이수액을 정수한 공무원 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저발 또는 계보하여 처분개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계안으로 과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 건당 10만원 이내 <p>② 제 1 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p> <p>제 40 조(양수기점검등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의 위탁을 할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p>제 41 조(법률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의 위탁을 할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p>제 36 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기타 낭 phí금의 조정 또는 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 37 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정수금의 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 41 조(법률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의 위탁을 할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29-12 제709호 사

보 1979.4.30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 및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중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령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중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중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

② 1979년 7월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중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별표 제1>

시설분담금액표

구 分	시 설 분 담 액	
	신 설	개 조
내 경 13 %	50,000 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 20 "	140,000 원	
" 25 "	230,000 원	
" 40 "	590,000 원	
" 50 "	920,000 원	
" 75 "	1,980,000 원	
" 100 "	3,800,000 원	
" 150 "	8,090,000 원	
" 200 " 이상	14,380,000 원	

* 내경구분은 양수기구경을 기준한다.

지 709 호 시

보 1979.4.30 27-13

<별표 제2> 가. 금수 사용료 요율 표

구분 용도	1 천 1 개월 기본요금		초과 사용료	
	기본수량(㎥)	기본요금(원)	사용구분(㎥)	단가(원)
제 1 종	30	4,000	31-200	200
			201 이상	300
제 2 종	20	1,200	21 이상	130
제 3 종	15	400	16-30	50
			31-50	90
			51 이상	130
제 4 종	500	125,000	501 이상	420
제 5 종	500	27,500	501 이상	70
제 6 종	사용수량 1㎥당 85 원			
제 7 종	100	5,000	101 이상	50
제 8 종	사용수량 1㎥당 200 원			

* 사실 소화전 기본요금은 월 500 원(1년분을 1회에 정수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 요율에 의한다.

나. 금수 종별 구 분 표

1. 제 1 종: 다음에 계기한 업태 및 이와 유사한 업태의 월 평균 200㎥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금수

번호	업태	적요
1	공연장	
2	숙박업소	
3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4	음식점, 음식점	특수음식점 포함
5	다과점	인삼찻집 포함
6	유기장, 오락장	보령, 골프, 청구장 포함
7	의료기관	가축병원, 안마시술소 포함
8	시장 및 백화점	사립대학부속병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 한다. 종합상가, 아케이드, 슈퍼마켓 포함.

29-14 제709호 시

1979.4.30

번호	업 태	적 요
9	이발소	미장원 제외
10	예식장	
11	수영장, 스키아트장	
12	세탁소	세탁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3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4	한증막	
15	운송 및 관광업	주차장, 창고보관업 포함
16	차량판매점비	세차장, 검사장 포함
17	화훼, 식목업	
18	학원, 사설학원, 강습소	도서실, 체육관 포함
19	칼라현상소, 사진관	현상, 인화를 취급하는 디, 괴점 포함.
20	식료품 제조가공업	
21	도살장, 정육점	
22	양조업, 재빙업	
23	제분업, 재당업	
24	청량음료 제조업	방아잔 포함.
25	제약 화공약품 제조	화장품 제조 포함
26	염색업	염색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27	빌딩	
28	도금업	
29	가구류 제조업	자개가공 포함
30	재재소, 목재소	목공소 제외
31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32	요업	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33	합성수지 제조업	
34	피혁제조 가공	
35	페인트류 제조업	
36	주유수	석유판매소 제외
37	연료제조	고압가스 제조 포함.

2. 제 2 종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다면, 전용면적이 3평미만인 구멍가게, 양곡소매업소, 연탄소매업소, 연초소매소는 제외)에 대한 급수

3. 제 3 종 : 시민주거용 금수 다만 10세대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서 단일양수기로 재량되 는 금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제 3 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총량을 사용 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이 1회미만인 단 수에 대하여는 철상한다.	영업소에 대한 금수
4. 제 4 종 : 가. 대중탕이외에 드탕, 가족탕, 터키탕, 휴게 실 사우나(휴게실과 접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의 영업을 하 는 업소에 대한 금수 나. 드조시설을 갖춘 안 마시술소에 대한 금수	6. 제 6 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 정하는 사업 포함) 청탁, 사 회 구호단체, 원호단체, 학 교, 병영, 국·공립대학부속 병원, 신문사, 방송국, 한국 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에 대한 금수
5. 제 5 종 : 대중용 옥탕시설만 있는	7. 제 7 종 : 제 4 조제 2 호 및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급수전에 대한 금수
	8. 제 8 종 : 단기금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금수시설에 대한 금수
	9. 사설소화전 : 담해금수시설에 설치된 양수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따로 시설한 소화전

별표 제 3

금 수 관 손 료 표

구 경 별	요 금	비 고
13%	1전 1개월 150원	
20%	" 300 "	
25%	" 400 "	
40%	" 600 "	
50%	" 1,200 "	
75%	" 2,400 "	
100%	" 2,800 "	
150%	" 4,000 "	
200% 이상	" 5,600 "	

* 구경은 양수기구경을 기준한다.

29-16 제709호 시

보 1979.4.3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32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증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내지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운임수수) ① 지하철운임은 통산거리·비례제에 의하여 승차거리 8 키로미터까지는 기본운임 60원으로 하고 8 키로미터를 초과하는 1 키로미터마다 4 원 63 전을 가산하

여 전율로 수수한다.

② 운임을 계산할 때의 거리산정은 1 키로미터 미만의 단수를 1 키로미터로 하고, 운임 및 부과운임 산정은 5 원 미만을 버리고 5 원 이상은 10 원으로 한다.

제 3조 (승차권의 종류 및 운임산정)
지하철 구간별 승차권의 종류 및 운임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 10조, 제 10조의 2 및 제 11조를 "제 4조", "제 5조" 및 "제 6조"로 한다.

제 12조를 "제 7조"로 하고, 제 2항의 별표 4를 "별표 2"로 한다.

제 13조 내지 제 17조를 "제 8조"
내지 "제 12조"로 하고, 제 15조
제 2항중 "5,000 원"을 "9,000 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차권의 종류 및 운임산정방법

종 류		운 입 산 정 방 법
보 통	일반승차권 (1매)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승 차권	소아승차권 (1매)	일반승차운임의 5 할
정 기	보통정기승차권 (월간)	30일 × 2회 × 일반승차운임의 7 할
승 차권	통학정기승차권 (월간)	25일 × 2회 × 일반승차운임의 5 할
회수권	일반회수권 (11매)	일반승차권운임 × 10
	학생회수권 (11매)	일반승차권운임 × 10 × 7 할

제 709 호 시 보 1979. 4. 30 29-17

비 고	1. 소 아 : 6세 이상 12세 미만 민족 2. 보통점기 : 상시 통일한 구간 및 경로를 승차하는 여객 3. 통학점기 : 교육법 제 81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시장이 지정 하는 학교(원)의 재적생으로서 통학을 위하여 상시 통 일한 구간 및 경로를 승차하는 학생
-----	---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99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0조(과태료의 징수)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제 98조
및 제 99조에 규정된 금지품 또는
재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여객에
대하여 징수함.

과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품 : 9,000 원이 하

2. 위험품 이외의 금지품 : 5,400 원

이하

3. 기타 재한품 : 900 원이 하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승인

- 전설부 고시 제 114호(79.4.11)
로 변경결정된 당시 평내 도시계획시
설(광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과
전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배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4. 26

서 울 특 별 시 장

29-18	제 709 호	시	보	1979.4.30
0. 광장지적승인 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정동광장 제 2 한강교북단 광장	마포구합정동 "	50,600 100,800	명칭변경 면적추가
기 정 변 경	제 2 한강교 남단광장 "	제 2 한강교남단 "	36,000 83,400	면적추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0 호(78. 11.8)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 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쪽원
신설	소로	1	1	10
신설	소로	2	2	8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파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파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9.4.25 서 울 특 별 시 장				

제 707 호 시

고 1979.4.30. 29-19

로 선 조 서

구분	동급	동별	번호	쪽월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	82 "	가양동 241	가양동 234	
기정	"	3		6	55	홍은동 275	홍은동 273	
변경	"	"		"	"	"	"	일부변경
신설	"	2		8	300	전관의동 319	전관의동 404	
"	"	1		10	350	성복동 326	성복동 산 15	
"	"	3		6-8	34	사당동 324	사당동 324	
"	"	2		8	1240	내곡동 산 112	내곡동 산 12	
"	"	"		"	110	"	"	
기정	"	3		6	820	평창동 310	평창동 530	
변경	"	"		"	"	"	"	
기정	"	2		8	330	도곡동 311	도곡동 94	310면지일대 가곡동리내 소 로
변경	"	"		"	"	"	"	"
기정	"	"		"	170	도곡동 316	도곡동 310	"
변경	"	"		"	"	"	"	"
기정	"	3		6	165	도곡동 330	도곡동 91	"
변경	"	"		"	"	"	"	"
기정	"	"		"	80	도곡동 320	도곡동 산 21	"
변경	"	"		"	"	"	"	"
기정	"	"		"	400	도곡동 93	도곡동 112	"
변경	"	"		"	"	"	"	"
신설	"	"		"	65	" 638	도곡동 638	지적승인 포함
기정	"	"		"	130	" 615	"	"
변경	"	"		"	"	" "	"	636 일대위치 일부변경
신설	"	"	4-6	145	길음동 1274	길음동 625		하수도
기정	"	"	6	38	홍제동 123	홍제동 124		
변경	"	"	"	36	"	"		122면지일대 위치변경
기정	"	2		8	206	상원곡동 86	상원곡동 산 1	위치변경 및 노선연장
변경	"	"		"	260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29-20 제 709 호 시

보 1979.4.3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2 호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 호(79.2.26)로 결정 고시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

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파와 도시계획 2파 및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과 도시정비파 및 새마을파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4.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적승인 조서

마을명	위 치	면적(평방미터)	비 고
점마을	강남구 암사동 104 일대	23,826 평방미터	2,375 평방미터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절	종 절	비 고
신설	소로	3	6	360	암사동 90-4	암사동 109	점마을

월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3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69호(79.3.10) 및 서울시공고제 92호(79.3.22)로 공탁한바 있는 현저 3구역과 옥인구역

에 대하여 일부 관리처분 계획을 실의 수정하고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와 주택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와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

3.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 (개별통보함)

나. 건축계획

(1) 건축물의 규모

구 分	층 수	건축 면적 (세대당)	건폐율	용적율	비 고
단독주택	2 층	50 이상	50% 이하	150% 이하	현저 3지구
공동주택 (연립)	2-3 층	"	40-50%	" "	유인, 현저 3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4 층	"	40%	200%	현저 3지구
복합주택	4 층	"	60% .	" "	현저 3지구

단, 유인지구는 2층연립은 건폐율 40%이하이며 3층연립인 경우 건폐율 35%이하임.

(2) 건축물의 높이

개개발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 1항 규모의 층수이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사항은 건축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7조 규정에 따른다.
(단, 유인지구 단독주택은 1층에 한 한다.)

(3) 건축물의 모양

(4) 건축물의 평면은 대지여건에 따르되 구역전체의 경관조성에 저해되지 않은형으로 한다.

(5) 건축물의 지붕은 2층이하는 물체를 둔 박공지붕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모임 및 박공지붕으로 한다.

(4) 건축방법: 주민자체에의한 건축

(5) 건축합의(동의)기간: 79.4.

- 79.6.30

(6) 건축기간: 79.5.1-79.12.31

1979.4.28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4 호

하천공작물(송수관 배설) 설치 험의

하천에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7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공작물(송수관배설) 설치 험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함.

1979.4.2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협의년월일: 1979. 4. .

나. 의 치: 강남구청내동 367지선상내천

" 살진동 186지선반천

" 포이동 900지선양재천

" 도곡동 300지선양재천

다. 목 적: 반월 신공업도시의 생활 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 배설

라. 협의내용: 위 하천구간에

29-22 제709호 시

보 1979.4.30

D 2,000 송수관 매설
마. 미협의자: 수도권수도건설 사무
소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자 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1 호(78.6.15)
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도시계획사
업(학교)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조
5항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
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9.4.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동 산 191-3 외 필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학교시설사업
(정보중, 고등학교)

다. 면적 및 규모: 78,542
(23,759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당초: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변경: 학교법인 성보학원 이사장
라. 위치 및 평면도: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6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자명의 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1 호
(78.11.10)로 도시계획사업(주차
장)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
특별시 고시 제 101호(79.3.2)로 도
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허가한 마
포구 성산동 360번지의 47필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원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
시한다.

1979.5.1

서울특별시장

○ 다음

- 1) 당초사업시행자: 한국 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지부
이사장 한정율
- 2) 변경사업시행자: 한국자동차 정
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지부
이사장 이윤화

제 709 호 시

보 1979.4.30 29-2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일부
변경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78. 4.26)로 시설변경 결정고시된 성동구 관내 사근국민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5.1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사근국민학교	성동구 사근동 229-2 일대	9,491 (2,871평)	
변 경		성동구 사근동 229-2 일대	16,119 (4,876평)	주 가 2,005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78. 4.25)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전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종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설설	소로	2		8	300	길풀의동 319	길풀의동 404	

별첨도면과 같음(도면생략)

29-24 제709호 시

보 1979.4.3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 호(79.1.10)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편제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첨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 분	사 설 명	위 치	면적
신 설	봉영여자중학교	영등포구 양평동 1 가 246 일대	4,991坪 1,509.7 평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0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건축
계획 및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294 호(74.8.30) 및 서울시 고시 제 323(78.7.4)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한 한남 1 구역(일부) 및 전농 1 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3.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개별통지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 열람하고 있다.

4. 공고내역

가. 관리처분계획

지 구 명	위 치	제 획 면적	비 고
한남 1 구역	한남동 726 번지 일대	5,635 평	관계 도서 생략
전농 1 "	전농동 541 번지 일대	8,018 평	"

나. 건축계획 : 별첨(주택개량과 비치)

1979.4.28

서울특별시장

제 709 호 시

보 1979.4.30 29-25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6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61 호(78.7.21)
및 동고시 제 80 호(79.2.2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운동
장)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 1항과 동법 제 57조 2
의 제 3항 규정 및 전고시 제 41
호('77.3.16) 천한위임사항에
의거 내용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 및 관할 구청 사업봉사실에
각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 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야구장 확
장 및 주차장 설치

3. 사업의 시행면적 : 7,085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기간 : 78.7.28-79.3.30

6. 준공도면 : 면첨(생략)

7. 검사인월일 : 79.3.23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7 호(78.6.5)
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97 호(78.6.16)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법 제 57
조의 2 규정과 전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천호출장소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6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내역)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일

동 316 의 7 월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상일여자중고등학교)

3. 사업시행면적 : 25,036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신광동 291-4

학교법인 흥목학원 이사장 김석하

5. 사업시행기간 : 78.6.20-79.2.28

6. 준공도면 : 생략

29-26 제 709 호 시

보 1979.4.30

◎서울특별시 공고제 139 호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424 호(78.10.23)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공람공고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하였던바 건설부공고 제 37호(79.3.19)로 시행인가되었기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2. 건설부 공고 이후부터 환지처분공고시까지 본 지구내에서 경작행위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전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등이 통제된다.
3.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영등포구청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9.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 구로동, 도림동, 신도림동, 신길동
각일부

다. 사업시행면적 : 1,515,038㎡
(458,297평)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기간 : 79.3.29~83.12.31

◎서울특별시 공고제 1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71.4.7)로 고시된 서울대교 북측 진입로 각 정비공사구간내에 저속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공고장소 : 마포구청 계시판
나. 공고기간 : 1979.4.30~1979.5.13

1979.4.28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장위치 : 마포구 마포동 34 의 8~35 의 30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서울대교 북측 진입로 각정비 공사(도로)
3. 사업의 규모 : 아스팔트포장 = 31.9 ㎡

제 709 호 시

보 1979. 4. 30 29-27

면적 = 126m ²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부과 = (3.65 × 4 × 2) 3.40경간	자조사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	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인가일: 79. 12. 31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34-28	대	18.8	도화동 9-5	박 춘 험	
2	" 29	"	170.9	" 4-1	신 두 원	
3	" 10	"	6.3	동선동 1가 38	최 숭 문	
4	" 13	"	67.4	도화동 304	해 동 의 광	
5	" 14	"	40	" 9-46	이 계 운	
6	" 30	"	25.5	" 304	해 동 의 광	
7	" 35-30	"	100.8	" 15	김 현 학	
8	" 3	"	131.9	" 291	장 세 호	
9	" 31	"	131.6	" 35	"	
10	" 32	"	139.8	" 35	"	
11	" 33	"	60.5	" 35	김 병 락	
12	" 34	"	1.3	대흥동 443	이 금 애	

건 물 조 서

번호	지 번	구 조	총건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34-8	세멘보록세멘화습 (정조)	14.69	34-8	박 춘 험	

1546

29-28 제 709호 시

보 1979. 4. 30.

번호	지 번	구 조	총전형세	소 유자	
				주 소	성 명
2	마포동 34-9	목조화물(주택)	13	35	고명선
3	마포동 35-1, 3, 4, 5, 7, 17	시멘트목스레트 (공장)	106.94	"	김형락
4	"	시멘트목스레트 (통로)	39.72	"	"
5	"	철근 및 연화조 평옥개(주택, 사 무실, 창고)	1 총 150.47 2 총 136.31 3 총 136.29 4 총 64.89 육량 3.51	" " " " "	"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1호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상품 수거 또는
수거파기명령(처분) 공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
거 및 파기명령(처분)하였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
를 공고함.

1979. 4.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업체 및 품목

업체명	소재지	품명	규격	불합격항목	처분내용
삼화완구(주)	영등포구 구로동 197-5	완 구	F.D6 카 (Wind up)	위험부	수거 및 파기명령
우신산업(주)	영등포구 오류동 73-1	알루미늄 압출형재		피막, 알카리침축성 캐스시험	"
동신산업진흥(주)	동대문구 북동 150	"		알카리침축성 캐스시 험	"

제 709 호 시

보 79.4.30 29-29

업 체 명	소 재 지	품 명	급 계	불 합격 항 목	처분내용
신양금속공업(주)	서대문구 충산동 68-3	알루미늄 압출형재		파각, 알카리침축성, 캐스시험	수거 및 파기명령
삼흥철강공업사	강서구 신정동 599-6	철근	D-10 1종	치수	

2. 수거 및 파기기간 : 79.4.30-79.5.10 (20 일간)

3.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3 호

특정연로 사용기기 시공업 지침 취소

열관리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특정연로 사용기기 시공업 지침을 취
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9.4.30

서울특별시장

다 음
(취소일자 : 79.4.30)

지정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 소 사 유
6	대한공용기체작소	문희철	중구 울지로 2 가 148-33	열관리법 제 26 조제 5 호
9	전 우 설비 공사	허재호	중구 울지로 4 가 302-7	"
26	(주) 부일 기공	박영원	용산구 동자동 43-82	"
35	해성 설비 (주)	허정래	중구 저동 2 가 47-11	"
118	아주건설 (주)	박병철	용산구 이촌동 302-68	"
141	창원설비화학	이동봉	중구 남대문로 4 가 3-1	열관리법 제 26 조제 5 호
143	도보건전 (주)	허오송	용산구 서계동 237-5	"